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질의응답 사례

본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대상자 관련

1. 태양광패널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재활용 의무와 회수 의무 모두 부여되는지?

➔ 자신이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만 부여됨. 다만, 자신이 수입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상) 판매업자에도 해당됨(회수의무 부여).

2. 국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경우 의무대상자는?

➔ 국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상표권이 주문자에게 있으므로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며 출고량 신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출고·수입실적 신고 시 OEM, ODM 제품은 ‘타사’를 선택하여 제출

3. 전기·전자제품 수입을 대행(오파상, Offer상)한 경우 의무대상자는 누구인지?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 상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대상에 해당. 의무를 대행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입을 위탁한 자로 하여야 함.

4.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 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 간에 제품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의 상표(브랜드) 및 제조·수입업자가 출자한 판매업자의 상표(브랜드)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판매업자를 말함. 해당 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가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종속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등 포함),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2호) 자료, 출자확인서 등 출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속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5. 매출액은 50억 초과인데 공사대금이 대부분이고 패널의 판매분은 5억뿐이라면 의무대상자 제외인지?

→ 매출액 50억은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이므로 위 경우 회수 의무 면제이나, 이 경우 태양광패널 매출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면제 가능.

□ 의무량 산정 관련

1.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을 ‘출고량’ 이 아닌 ‘폐제품 발생량’ 으로 설정한 이유는?

→ 2010년 이후 태양광패널이 본격 설치된 후 기대수명(15년~25년)이 도래하지 않아 제품 출고량 대비 폐패널 발생량이 현저히 낮음. 또한, 현재 태양광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폐제품 발생량을 기준으로 선정.

2.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시 국내출고량만 반영하는지? 재활용의무량 산정식에서 조정계수는 5%가 고정적인지?

→ 국내출고량만 반영.

→ 조정계수는 매해 변경될 수 있음.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적용하며 환경부가 고시함.

3. 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의무를 부여함과 별도로 판매업자에게도 회수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출고량 대비 과도하게 목표량을 산정한것이 아닌지?

→ 기존의 49종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량은 약 30%이며, 회수의무량은 약15% 수준. 둘의 의무량을 합한다 해도 출고량 대비 약45%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4. 의무량 산정시 반영되는 ‘최근3년간 폐제품 발생량(a)’ 은 한국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해지 또는 교체한 전력량(b)’ 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셨다. (b) 수치를 (a)로 어떻게 환산하는가?

→ 발전용량(MW)으로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해지 또는 교체

한 전력량(b)' 을 중량단위인 '폐제품 발생량(a)' 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 위하여 용역과제로 수행하였음. 보급연도별 태양광 패널의 평균중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함.

5. 폐제품 발생량은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예측이 쉽지 않을텐데, 발생량보다 의무량이 더 커질 가능성은?

→ 관련 용역 결과, '폐제품 발생량' 추세와 현행 산정식에서 발생량보다 의무량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음. 향후 관련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적정 의무량을 산출할 예정임.

6. 재활용의무량을 초과달성시 해당실적을 내년으로 BANKING 가능한지?

→ 가능함.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입력시, 전(전)년도 초과된 재활용실적 사용 가능함.

7. 반품된 제품은 출고량·매입량에서 제외신고 하는지?

- 제조업자의 경우 국내 출고(반품, 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된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신고
- 판매업자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한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신고. 단, 제조·수입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매입량에서 제외하며,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매입량에서 제외하지 않음.

□ 기타

1.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3년부터 환경정보장제도는 추가로 적용되는것인지?

→ 동일연도 기준 중복부과 되는 것이 아니며, 23.1월부터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아닌 환경정보장제도 이행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임. 22년분 폐기물부담금은 23년에 납부하며, 23년도 재활용·회수의무량 미이행시 부과되는 부과금은 24년도에 납부함.

2. 재사용 실적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가능한지?

→ 수출되어 재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해줄 수 없음. 국내 재사용의 경우 현행 전자제품 재사용 실적 인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사용 이력 관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함.

3. 환경부는 중고패널 수출(재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지?

→ 향후 폐패널 전수 통계 집계로 재활용의무량이 현실화되면 수출되는 패널 일부도 재활용의무량에 편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중고패널이 대부분 개도국으로 수출되는데 이들 국가는 폐패널의 처리설비 부재로 적정 처리가 곤란한 점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